

대전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9가단126386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 윤현진

피고1. A

2. 주식회사 B

3.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현, 한래현

변론 종결2020. 5. 20.

판결 선고2020. 6. 1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63,541,581원 및 그 중 574,326,782원에 대하여는 2019. 4. 19.부터, 87,032,446원에 대하여는 2019. 7. 29.부터 각 2019. 12. 4.까지는 연 8%,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원 중 268,279,485원 및 그 중 267,326,221원에 대하여 2019. 4. 19.부터 2019. 12. 4.까지는 연 8%,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A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6. 체결한 대물변제계약을 1억 9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C은 원고에게 1억 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는 2014. 3. 21.부터 2018. 5. 30.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고 A, 주식회사 B와 보증금액 합계 6억 8,240만 원으로 정한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B의 2019. 1. 31.자 가압류결정에 따른 권리침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9. 4. 19.경 및 2019. 7. 29.경 2회에 걸쳐 합계 663,135,48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대지급금 채권이 발생하여 피고 A에게 구상금 663,541,5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채권이 있다(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68,279,4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채권이 있다).

2) 피고 C은 어머니인 피고 A와 2018. 11.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① 이 사건 부동산 1억 9,700만원, ② 청주시 흥덕구 D 토지 및 건물 3,076,343,000원 합계 3,273,343,000원이고, 반면 피고 A의 소극재산은 ① 원고 663,135,488원 구상금채무, ② 피고 287,761,299원 채무, ③ E은행 8,000만 원 대출금채무, ④ 중소기업은행 2,427,537,716원 대출금채무, ⑤ F은행 2,120만 원 대출금채무, ⑥ G 200,139,440원 채무, ⑦ (주)H 456,708,190원 채무 등 합계 4,130,179,709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4)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는데,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2019. 2. 14.경 E은행에게 피담보채무 8,000만 원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2020. 2. 24.을 기준으로 1억 8,900만 원에 이른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1,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E은행, 중소기업은행, F은행, (주)H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계약일로부터 불과 3개월 이내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계약의 취소에 관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성립과 채무자의 사해의사 가) 사해행위에 있어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것, 즉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자 중 1인인 피고 C에게 매각하여 재산이 감소되고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기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C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3)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E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공동담보가액은 1억 900만 원(= 시가 1억 8,900만 원 - 피담보채무액 8,000만 원)으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구상금 채권액 663,135,488원보다 적다. 사해행위에 따른 이 사건 계약의 취소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1억 900만 원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은 1억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1억 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영범

별지